

고령자를 배려한 생활복지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 고령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pace Planning of Lifestyle and Welfare for the Elderly
- Focused on the Elderly in Gwangju City -

임만택 * 박경갑 ** 김덕환 ***
Lim, Mann-Taek Park, Kyung-Gap Kim, Duk-Hwan

Abstract

As the elderly population increases, concerns for the elderly's welfare become greater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In order to give a chance for the elderly to live in familiar dwelling and regional context to which they are accustomed, and to participate in their society actively, it is of great importance that suitable living spaces must be provided for the elderly. The practical ways of providing people with good living environment and its easy maintenance for healthy and valuable lives were discussed in this paper.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propose pertinent policies related to social issues concerning the elderly. 137 seniors over 60 living in Gwangju city were sampled and surveyed. The scope of planning for the elderly's lifestyle and welfare is divided into two parts, one is planning of space for the realization of stable and spacious dwellings and another is urban environment planning capable of supporting healthy and affluent lifestyles. Also, the realization of stable housing, the construction of urban structure for a healthy life, and the provision of barrier-free living conditions are investigated. For increasing the degree of stabilization and improvement for the elderly's life, self-governing bodies should grasp the demands of living condition and spatial requirements by taking the lifestyles of the elderly into account in urban or regional levels. Then, a master plan including development, improvement, execution, and maintenance of proper housing facilities and urban environments should be made for the best results.

Keywords : The Elderly, Lifestyle and Welfare, Housing Facilities, Urban Environments

1. 서 론

우리나라는 그 동안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더불어 생활 수준 향상과 의학 발달로 평균 수명이 1990년에 71.3세에서 2000년에는 74.3세로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노인인구도 점차 증가하여 65세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990년 전체 인구의 5.1%(219만명)에서 2000년에는 7.2%에 도달하였고, 2019년에는

14.4%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¹⁾.

따라서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고령사회에 들어서 있으며, 2019년부터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90년 50,146(4.4%)명이었고, 1991년부터 1996년까지는 매년 0.1%씩 증가되어 왔으나, 1997년부터는 0.2%가 증가되어 2000년 77,325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5.6%에 이르고 있으며²⁾, 노인인구는 날로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새롭고 다양한 복지정책의 수립이 시급하다 하

* 정회원, 조선대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 정회원, 목포과학대 건축과 교수

*** 정회원, 조선대 산업대학원 공학석사

이 논문은 2001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1)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 자료실(2002), 연도별노인인구추계.
2) 광주광역시(2002), 2001 광주시정백서, p.274.

쳤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아울러 노인들의 복지 욕구 또한 양적, 질적으로 더욱 증대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고령자의 간호나 자립의 기반이 되는 도로, 공원, 주택 등의 생활복지공간 개선의 전개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재가서비스 욕구의 증대와 다양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고령자의 잔존능력을 활성화하면서 가능한 한 가정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령자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고령자를 위한 사회복지정책이 유효하게 기능하려면 건축물이나 도로 등이 고령자의 이용이 배려된 배리어프리의 도시환경이나 고령자의 거주나 보호에 대응한 주택 등 질·양과 아울러 주택·사회자본의 충분한 정비가 복지기반의 기초적인 조건이다.

고령자가 포함된 모든 사람들이 자립하여 존엄을 유지하면서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세대를 초월하여 교류하는 것이 가능한 사회, 즉 활발한 복지사회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공간에서 고령자를 배려한 설계에 의한 주택의 보급, 공원이나 보행환경의 정비 등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생애를 통하여 건강하며 마음이 풍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그리하여 고령자의 생활복지공간에 관한 고령자의 의식 등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관련정책의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고령자를 위한 생활복지공간계획의 개념과 과제

1. 생활복지공간의 개념

선진국의 노인복지정책은 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노인복지서비스로 체계화되고 있다. 첫째,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의 주요 프로그램은 대체로 사회보험제도의 일환인 연금보험과 국민층을 위한 사회부조제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앙정부의 주도로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둘째, 의료보장정책은 크게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방식과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의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모두 중앙정부의 주도 아래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셋째, 노인복지서비스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주도

아래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구의 노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산업화 등에 따라 국민복지수요 급증을 예상하여 보건복지부에 의하여 「제1차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1999~2003)」을 수립하였다. 21세기 국민복지의 비전으로 사회보험의 전국민 확대 및 적정급여혜택 제공을 통한 전국민 사회보험 실현, 생활보호대상자 확대 및 보호수준의 향상을 통한 최저생활수준 보장, 소득·의료·재활지원 시책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복지서비스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스웨덴의 노인복지정책의 주요설정 목표는 노인의 취향에 따라 안정되고 활기찬 삶을 보장·유지하며, 질 좋은 치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또한 노인의 주거와 관련된 국가목표 중의 하나는 한 방에 한 노인이 거거하면서 독립된 부엌과 화장실을 갖도록 하며 요양원에 대해서도 1인 1실을 지향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1996년부터 고령화사회(Aging Society)가 이슈화되면서 고령자문제는 고용·복지뿐만 아니라 금융·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 다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의 이슈는 정책의 「소망성」에서 「실현가능성」으로 변화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부터 고령자복지정책에 의한 대부분의 사업이 지방정부로 넘어가고 재가보호(home care)의 경우 시설보호(residential care)에 비해서 민간부문(independent sector)의 역할이 적다. 시설보호의 경우 약 90%를 민간부문에서 담당하지만 재가보호는 약 50%를 민간부문에서 담당하고 있다.

미국은 빈곤계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회보장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노인을 비롯한 일반 국민의 복지는 거의 민간이나 시장경제에 일임하고 있어 노인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운동의 영향으로 요양원과 기숙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이 대거 지역사회의 자신의 거주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에 노인에 대한 장기보호도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로 전환되었다³⁾.

3)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실(2002),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관련 귀국보고서, p.29.

4) 임만택, 박경갑(2002), 고령사회에서 미국 주택정책의 전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제4권2호, p.25.

주택이나 복지시설 등에서 고령자를 배려한 정책의 추진과 아울러 풍요롭고 활력에 찬 사회를 위하여,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위해서도 생활공간에서 장벽(barrier)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제외국에서의 법령의 대상이나 기준의 수준은 각국의 정치·문화 등 역사적·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르지만, 공공건축물이나 공공교통을 새로이 정비한다든지 개축·개조할 때에는 배리어프리로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기존 스탁의 적극적인 배리어프리화에의 착수 등 본격적인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1994년에 건강하며 여유있는 생활을 하기 위한 주택·사회자본정비를 목표로 「생활복지공간조성대강」을 비롯하여 「하트빌딩법」(고령자, 신체장애인 등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특정건축물의 건축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1995년에는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 1996년에는 장수사회에서 주택설계의 방법을 제언한 「장수사회대응주택설계지침」을 마련하였다. 그 기본은 실내 바닥 단차이의 원칙적 해소, 손잡이를 요소에 설치 또는 준비, 그리고 동선 폭의 확보(적어도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등의 3가지로 하였다. 주택정책의 방향은 종전에는 개인의 기본생활이 훼손되지 않는 시설 확충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지역 커뮤니티, 각종 복지서비스, NPO(비영리기관) 등과 연계하면서 주거환경을 변용하여 나아가도록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0년에는 「교통배리어프리법」(고령자, 신체장애인 등의 공공교통기관을 이용한 이동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노인에 대한 시설보호중심에서 가정에 있는 노인의 보호와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재가노인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치매·중풍 노인을 위한 의료복지시설을 확충해 가고 있다. 표 1의 노인복지시설현황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수에 있어 전국과 광주시를 비교할 때 많은 차이가 나타나 광주시에는 앞으로 시설확충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1998년 4월부터 복지시설, 종합병원, 터미널, 공항, 향만여객시설 등 주요 공공기관은 2000

표 1. 노인복지시설현황
(2000.12.31 현재)

시설종류	지역	계	시설현황							
			무료시설			실비시설		유료시설		
주거복지(주거, 의료)시설	전국	250	양로	요양	전문요양	양로	요양	양로	요양	유료주택
			광주	9	4	3	1	1		
재가복지시설	전국	238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광주	6	3	2		1		
여가복지시설	전국	41,413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광주	779	6	765	8			

출처: 보건복지부 가정복지심의관실(2001), 2000년도 노인복지시설현황. 전국노인여가시설현황. 광주광역시(2002), 2001 광주시정백서.

년 4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공공건물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2003년까지 65% 수준으로의 제고⁵⁾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고령자의 복지정책 가운데 생활환경의 편리성·안전성·쾌적성 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 비추어 고령자를 위한 생활복지공간의 개념은 "고령자의 자립생활을 기반으로 안정되고 여유있는 생활공간을 형성하는 데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2. 생활복지공간계획의 범위

고령자를 배려한 생활복지공간계획의 범위는 생애를 통하여 안정되고 여유있는 주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주거공간계획, 건강하며 풍부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적 기반구축에 필요한 도시환경계획으로 대별할 수 있다.

실현해야 할 생활공간계획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생애를 통하여 안정되고 여유로운 주생활의 실현
 - (1) 자립된 일상생활의 실현이나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

5) 보건복지부(1998), 제1차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 p.47.

(2) 다양한 거주방식의 선택 실현

2)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적 기반구축

(1) 재해 등의 위험이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의 구축

(2) 공원 등의 공간 확보와 정비

3) 장애가 없는 생활공간의 형성

(1) 고령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원활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도로, 공원, 공공건물 등 생활공간의 정비

(2) 노인복지시설의 계획적 개선 및 확충

3. 생활복지공간계획의 과제

고령자의 상황이나 정책의 동향 등을 검토하여 고령자를 위한 생활복지공간의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나 고령자세대의 증가에 대응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고령자가 있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음과 아울러 핵가족화로 고령독거세대나 고령자 부부세대 등 고령자만의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구별분포(1995년)⁶⁾를 전국적으로 보면, 노인가구거주비율 30.6%, 1인가구거주비율 13.7%, 부부가구⁷⁾ 거주비율 16.4%, 기타⁸⁾ 0.5%, 비노인가구⁹⁾ 거주비율 69.4%로 나타났다.

이들 세대는 가정 내의 보호기능이 낮은 세대가 많고, 긴급시의 대응 등 안전대책의 요구도 높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주택 스톡의 질·양을 함께 확대하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고령화의 단계에 대응하여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세대에서 고령자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고령자가 현재의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더라도 현재의 주택 스톡 대부분은 연령이나 장애 정도에 의한 방배치·설비·시방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고령자가 안심하고, 쾌적하게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스톡의 확

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고령자가 있는 세대뿐만 아니라 현재 젊은 세대에게도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고령자세대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등 고령자를 위한 주택의 공급을 추진하는 것이 과제이다. 대상은 고령독거세대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고립화를 예방하면서 고령부부세대나 동거세대를 포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령이 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단절·고립화는 전거를 하면 고령자의 허약화 정도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그리하여 이들 고령자를 위한 주택은 그 지역에 분산·건설하여 그 주변의 고령자가 입주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고령자가 지역에 계속해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이나 거주방식 등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주택건설을 추진함과 아울러 다양하고 원만한 교류나 상호부조 등이 가능한 커뮤니티를 형성해야 한다.

2) 동거세대대의 대응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서도 3세대 동거를 희망하는 세대도 적지 않다. 고령자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의 개선과 아울러 재가복지 서비스 등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이 과제이다.

3) 주택개선에의 대응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심신기능의 저하에 의하여 계단에서 넘어진다든지, 주택 내에서 전도하여 골절하는 고령자도 보인다. 주택개선은 그와 같은 주택의 불비에 의한 거동불편의 원인을 제거하고, 고령자 자신이 편리하고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으며, 고령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재가보호서비스를 받기 편리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이다.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고령화에 대응한 준비를 하거나, 약간의 개조로 장래의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배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존 주거에서의 개선도 중요하다. 주택개선은 증·개축뿐만 아니라 복지기기의 이용이나 방의 변경 등 공사를 하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도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고령자와 그 가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보건·의료·복지정책과의 제휴

노인복지는 거택보호, 자활보호, 생활보호, 복지시

6) 통계청(2000), 2000 한국의 사회지표, p.132.
7) 부부중 두 사람 모두 65세 이상인 경우
8) 부부관계 이외의 65세 이상 노인들만 사는 가구
9) 노인가구형태가 아닌 기타 다른 형태의 일반가구에 노인이 사는 경우

설수용 등으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다.

재가복지의 충실한 서비스와 고령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보호제공 주택이 예상·요구되고 있다.

5)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는 도시환경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조사¹⁰⁾한 것으로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1997년)를 보면 전국적으로, 매우 만족 8.5%, 약간 만족 20.2%, 보통 42.6%, 약간 불만 25.1%, 매우 불만 3.5%으로 나타났는데, 「만족」하는 경우가 28.7%로 그다지 높지 않다.

거주지역에 대한 불만 이유(1997년)¹¹⁾의 경우는 교육여건 6.4%, 교통사정 22.2%, 주변환경 22.5%, 공해 9.8%, 편의시설 16.2%, 범죄발생 2.6%, 주차시설 15.0%, 비싼 물가 4.5%, 기타 0.9% 등으로 나타났는데, 교통사정과 주변환경이 44.7%로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령자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도로 등 도시시설의 정비도 필요하다.

도로환경개선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휠체어는 물론 고령자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고령자와 관련된 복지·문화·운동·보건·의료 등 분야의 시설이 보다 다양해진다면 일상생활과의 관련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이들 시설은 편리한 입지적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시설 정비는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촉진할 뿐 아니라 생활을 풍부하게 하여 보호욕구의 축소를 이어진다.

III. 고령자의 생활복지공간계획을 위한 의식조사

1. 조사의 방법 및 범위

조사대상자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남녀 137명이 유효한 응답을 해 주었다. 표본추출방법은 층화이단무작위추출법에 의하였다. 면접청취법에 의한 방법으로 조사내용은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사항, 주택에 관한 사항,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표 2. 조사대상자의 특성

구분	항목	f	%
성별	남자	67	48.9
	여자	70	51.1
연령	60~70세	70	51.1
	71~80세	49	35.8
	80세 이상	18	13.1
배우자	있다	56	40.9
	없다	81	59.1
가족형	독거세대	27	19.7
	부부2인세대	20	14.6
	본인+자녀세대	46	33.6
	본인+자녀+손자	39	28.5
	기타	5	3.6
건강상태	양호	21	15.3
	그럭저럭 양호	15	10.9
	보통	28	20.5
	그다지 좋지 않다	68	49.6
	좋지 않다	5	3.7

이었다. 기간은 2001년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었으며, 자료분석은 백분율에 의하였다.

2.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는 모두 137명으로 여자가 51.1%로 남자에 비하여 약간 많았고, 60~70세의 경우가 51.1%로 가장 많았다. 배우자는 없는 경우가 59.1%로 약간 높았고, 가족형은 본인+자녀세대로서 2세대인 경우가 33.6%로 가장 높았다. 건강상태는 그다지 좋지 않은 경우가 49.6%로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반 정도는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표 2).

3. 거주상태

고령자의 거주상태로는 거주년수, 주택형, 주택점유형태, 자가취득방법, 차가의 원소유자, 생활하는 방의 층수, 주택만족도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표 3).

현 주택에서의 거주년수를 보면 「6~10년」 경우가 18.2%로 가장 많았으나, 「20년 이상」된 경우가 41.6%로 나타나 장기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의 종류는 「단독주택」이 55.5%로 가장 많았으나, 「아파트」가 40.9%로 적지 않은 분포를 보였다. 주택의 점유형태는 「자가」의

10) 통계청(2000), 2000 한국의 사회지표, p.336.

11) 통계청(2000), 2000 한국의 사회지표, p.337.

표 3. 거주상태

구분	항목	f	%	
거주년수	태어나서 계속	18	13.1	
	30년 이상	19	13.9	
	21~30년	20	14.6	
	11~20년	18	13.1	
	6~10년	25	18.2	
	4~5년	20	14.6	
	1~3년	17	12.5	
주택형	단독주택	76	55.5	
	아파트	56	40.9	
	기타	5	3.6	
주택 점유형태	자가	94	68.6	
	차가	43	31.4	
자가취득 방법	자기 또는 가족이 신축	28	29.8	
	부모 등으로부터 상속	8	8.5	
	과거에 상속 또는 구입한 주택을 자기 또는 가족이 개축	15	16.0	
	민간사업자로부터 구입	13	13.8	
	개인으로부터 구입	30	31.9	
차가의 원소유자	개인	24	55.8	
	시, 주택공사	7	16.3	
	민간사업자	12	27.9	
생활하는 방의 층수 주택만족도	단독주택	1층	68	49.6
		2층	8	5.9
	아파트	1층	13	9.5
		2층	12	8.8
		3층	8	5.8
		4층	7	5.1
		5층	6	4.4
		6층 이상	10	7.3
	기타	1층	4	2.9
		2층	1	0.7
		매우 만족	14	10.2
		약간 만족	35	25.6
		보통	58	42.3
		약간 불만	17	12.4
	매우 불만	13	9.5	

경우가 68.6%로 가장 많았으며, 자가의 취득방법은 「개인으로부터 구입」이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차가의 경우 누구로부터 빌린 것인가에 대해서는 「개인」으로부터가 55.8%로 가장 많았고, 일상생활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는 방의 층수는 「1층」이 62.0%로 가장 많았는데, 고령자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배

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 주택에서의 만족도는 「만족」의 경우가 35.8%로 훨씬 높게 나타났으나 여전히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고령자 배려 주택

고령자에의 배려측면에서는 고령자 전용의 방 확보 상황, 고령자가 허약했을 때 적합한 거주방식, 현 주택에서의 고령자 배려의 구조나 설비, 고령자 배려의 구조나 설비의 조건, 고령자 배려 주택 등이다 (표 4).

고령자 전용의 방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있다」의 경우가 59.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고령자가 허약했을 때에 어떤 거주방식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의 주택에서 이대로 살고 싶다」의 경우가 46.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보건·의료 등이 제공되는 주택에 입주하고 싶다」의 경우로 42.3%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새로운 거주지보다는 현재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보건·의료 등이 제공되는 보호제공 주택이 있다면 입주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 주택에 고령자를 배려한 구조나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령자를 배려한 것은 없다」의 경우가 61.3%로 나타났으나, 증·개축이나 신축 주택에는 고령자를 배려하고 있음은 고무적이라 하겠다. 주택에서 고령자가 안전하며, 편리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나 설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욕실의 단차이를 없애고, 손잡이나 미끄럼방지 장치를 설치할 것」의 경우가 30.7%로 가장 높았다. 고령자를 배려한 구조나 설비가 갖추어진 주택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현재의 주택을 고령자를 배려하여 개축하고 싶다」의 경우가 45.3%로 나타났는데 고령자를 배려한 주택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고령자의 심신기능 저하에 대응하여 고령자의 자립 또는 보호에 적합한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면 주택 설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함과 아울러 필요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그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일상생활상의 지원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에게 필요한 때에 관리인, 가정봉사원, 물리치료사 등 전문직원이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치

표 4. 고령자 배려 주택

구분	항목	f	%
고령자 전용의 방	있다	81	59.1
	없다	56	40.9
고령자가 허약했을 때 적합한 거주방식	현재의 주택에서 이대로 살고 싶다	64	46.7
	현재의 주택을 개축하여 고령자가 살기 편리하게 하고 싶다	12	8.8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주하고 싶다	3	2.2
	보건·의료 등이 제공되는 주택에 입주하고 싶다	58	42.3
현 주택에서의 고령자 배려의 구조나 설비	특별히 고령자를 배려한 것은 없다	84	61.3
	중·개축에 의해 고령자를 배려한 구조나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	20	14.6
	신축, 구입시에서 고령자를 배려한 구조나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	33	24.1
고령자 배려의 구조나 설비의 조건	화장실에 손잡이나 난방장치를 갖추실 것	14	10.2
	복도나 계단에 손잡이를 설치할 것	17	12.4
	욕실의 단차이를 없애고, 손잡이나 미끄럼방지 장치를 설치할 것	42	30.7
	현관, 방과 방 사이 등의 단차이를 없앨 것	7	5.1
	화재, 가스누설, 누전 등의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12	8.8
	긴급연락장치(방법에 한정하지 않고, 건강불량시 등의 때에 연락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28	20.4
	복도나 바닥을 미끄럽지 않게 할 것	17	12.4
	특별히 고령자를 배려한 구조나 설비가 갖추어진 주택에 거주하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5	3.6
고령자 배려 주택	현재의 주택을 고령자를 배려하여 개축하고 싶다	62	45.3
	현재의 주택은 고령자를 배려한 구조나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 이것으로 충분하다	53	38.7
	고령자를 배려한 구조나 설비가 갖추어진 주택을 새로이 구입하거나 신축하고 싶다	17	12.4

등을 갖춘 고령자 주택의 공급정책과 복지정책과의 제휴가 요구된다.

5. 생활환경

생활환경에서는 주택에서 외출시의 문제점과 외부 환경에서 생활상의 문제점을 구분하여 다룬다.

외출시의 문제로는 외출의 상황, 자주 가는 장소,

주된 이용 교통수단, 가로환경의 불편한 점, 교통환경의 불편한 점, 주변에서 부족하거나 이용하기 불편한 시설 등이다. 또한 외부환경에서는 주거환경의 생활상 불편한 점, 고령자를 배려한 도시건설 추진 시책의 중요도, 생활환경의 편리성 등이다(표 5).

외출의 상황에서는 「매일 외출한다」가 34.3%로 가장 많았고, 「가끔 외출한다」가 29.9%로 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보아 「외출」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가는 장소로는 「노인복지회관」이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노인들이 모여 즐길 수 있는 공간 확충이 필요하다.

외출에 이용되는 주된 교통수단으로는 「버스」가 39.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도보」로 35.0%이었다. 「보행환경, 도로환경」에서 불편하게 생각한 다든지, 주의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야간의 도로조명이 어둡고, 가로등이 적다」가 2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통기관, 환경정비」에서 불편하게 생각한다든지, 주의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버스의 계단이 높고, 승강이 불편하다」가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변에서 부족하다든지, 이용하기 불편한 시설물로 「복지시설(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등)」이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더 많은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이용상의 불편한 점으로는 먼 거리, 사용시간제한을 들었다. 도시의 기능배치계획을 통하여 주간보호시설 등을 계획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주거환경에서 평소 생활하기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교통량이 많아 위험하다」가 22.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표 6).

고령자를 배려한 도시환경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어떤 정책이 중요하다고 보는가에 대하여 만남이나 교류의 장이 되는 「공원, 수변공간 등의 정비」가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커뮤니티 활동의 충실을 위하여 「공원, 하천 등의 식재나 화단으로서의 개방추진」이 26.3%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수변공간, 공원이나 오픈 스페이스의 정비 등에 의하여 물·녹지의 확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로녹화나 도로경관정비를 추진함과 아울러 자연과의 만남을 체험할수 있는 쾌적한 도로정비를 추진해

표 5. 외출시의 문제

구분	항목	f	%
외출의 상황	매일 외출한다	47	34.3
	가끔 외출한다	41	29.9
	용무가 없으면 외출하지 않는다	39	28.5
	거의 외출하지 않는다	10	7.3
자주 가는 장소	상점·슈퍼마켓	10	7.3
	의료시설	14	10.2
	친구·지인의 집	24	17.5
	은행·증권회사	5	3.6
	공원·유원지	28	20.4
	도서관	2	1.5
	자녀나 친족의 집	12	8.8
	근무처	10	7.3
	노인복지회관	32	23.4
외출시 주된 이용 교통수단	도 보	48	35.0
	자전거	6	4.4
	버스	54	39.4
	가족 등의 차량	12	8.8
	자가용 승용차	17	12.4
외출시 「보행환경, 도로환경」의 불편한 점	특별히 없다	31	22.6
	좁은 도로,凹凸이 많고, 미끄러지기 쉽다	29	21.2
	교통혼잡	22	16.1
	방치된 자전거 등 보도상의 장애물이 많다	6	4.4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의 매너가 좋지 않다	5	3.6
	도로에 단차이가 많다	9	6.6
	야간의 도로조명이 어둡고, 가로등이 적다	35	25.5
	특별히 없다	27	19.7
외출시 「교통기관, 환경정비」의 불편한 점	공중화장실이 적고, 더럽다	22	16.1
	버스의 계단이 높고, 승강이 불편하다	41	29.9
	역에 계단이 많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가 적다	4	2.9
	주차시설, 자전거보관소가 적다	4	2.9
	노약자석이 적고, 불편하다	21	15.3
	소공원 등 쉴 수 있는 장소가 적다	10	7.3
	벤치나 의자가 적다	8	5.8
주변에서 부족하거나 이용하기 불편한 시설	특별히 없다	26	29.0
	의료시설	36	26.3
	문화시설(도서관, 미술관, 문화 회관)	18	13.1
	복지시설(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등)	45	32.8
	공원·유원지	7	5.1
	도서관	5	3.6

표 6. 외부환경

구분	항목	f	%
주거환경의 생활상 불편한 점	특별히 없다	27	19.7
	교통량이 많아 위협하다	31	22.6
	빈 깡통 등의 쓰레기가 자주 버려지고 있다	12	8.7
	소음이 있다	10	7.2
	하천이 더러워지고 있다	7	5.1
	주택이 과밀하다	10	7.2
	낮은 자연이 감소되고 있다	12	8.7
	옛날의 시가지가 사라지고 있다	3	2.1
	녹지가 적다	6	4.3
	일조, 통풍이 좋지 않다	11	8.0
고령자를 배려한 도시환경정비 추진정책의 중요도	배기가스 등에 의하여 공기가 더러워지고 있다	8	5.8
	가로환경의 정비	23	16.8
	공원, 수변공간 등의 정비	58	42.3
	공원, 하천 등의 식재나 화단으로서의 개방 추진	36	26.3
생활환경의 편리성	방재대책	20	14.6
	매우 편리	14	10.2
	약간 편리	35	25.6
	보통	72	52.5
	약간 불편	12	8.8
매우 불편	4	2.9	

야 할 것이다.

또한 관계기관의 효과적인 협조와 지역민의 협력에 의하여 고령자, 특히 독거노인, 거동불편 노인 등을 범죄, 재해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생활환경은 종합적으로 보아 생활하기 편리하는가에 대하여 35.8%만이 「편리」하다고 한 점을 볼 때 아직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고령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교통기관의 편리성 확보, 각종 공공시설의 구조, 설비의 개선 등을 계속해서 추진함과 아울러 고령 운전자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대책을 검토한다.

IV.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가 21세기에 들어서 맞이한 고령화사회는

고령사회를 위한 기초 준비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준비를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복지사회의 생활상과 복지기반시설정비를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령자를 배려한 생활복지공간을 계획함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생활복지공간계획지침의 책정이 요구되고 있다.

고령자 주택은 고령자의 연령에 도달한 주민이나 그 연령 가까이 도달한 주민, 보다 직접적으로는 주택이 곤란한 고령자가 대상이 되는데, 이들에 첨가하여 고령자와 동거하는 가족, 또한 자신이나 가족이 문제가 되는 모든 주민도 계획의 대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광주광역시 거주자에 한정된 의식조사를 통해서 살펴본 바이지만 현재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은 경우가 높게 나타난 정주지향성을 볼 때 고령자로서는 거주지 이동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자주택에서 뿐 아니라 모든 주택에는 고령자를 배려한 건축계획이 마련되어 고령화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자녀와는 현재 동거하고 있거나 동거를 희망하고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3세대 가족을 위한 주택계획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생애생활설계 중에서 주생활을 계획적으로 검토하고, 자가, 차가를 막론하고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주택선택과 안정되고 여유있는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거주수준의 향상 및 주택선택의 원활화로 부모와의 동거 등에 따른 다양한 거주형태가 가능케 하고, 심신기능이 저하된 고령자의 이용이 편리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거주상태에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정되고 여유있는 주생활을 위하여 최저거주수준을 마련하고, 가능한 한 모든 세대가 이 수준을 목표로 하여 거주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건강에 도움되는 공원 등의 정비, 사회적 심리치료효과를 가지는 하천이나 수림지 등의 정비, 만남·교류의 장으로서 공원, 수변공간 등의 정비나 보행환경, 사회복지시설 등의 정비, 커뮤니티 활동의 충실을 위해서는 공원의 확충, 하천의 자연친화적인 정비 추진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동의 자유는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조건이다. 그리하여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편

리뿐만 아니라 휠체어 사용자도 포함한 승강의 편리성, 승차의 안정감, 행선지의 확실한 분별성, 적설시에의 대책 등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로서 보도 등에 유도선을 부설하여 이 유도선에서 음성이나 디지털신호를 발신하여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자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유도하는 보안 시스템인 유도통신시스템의 확충 등도 고도정보사회의 진전에 대응한 장래의 과제이다.

지역 고령자의 생활의 안정·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지역의 고령자를 배려한 생활공간 수요를 충분히 파악하여 주택 및 시설, 도시환경 등의 건설·개선·운영 등에 관하여 지역수준의 계획을 포함한 마스터 플랜을 마련함과 아울러 그 마스터 플랜에 의한 생활공간의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도시개발과 계획, 주택설계는 인간이 모든 생애단계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Lifelong housing"과 세대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와 같이 고령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복지공간의 형성이 요구되는데 고령화의 진전 속도에 비하여 국민의 의식이나 사회 시스템의 대응은 늦어지고 있다. 사회 시스템이 고령화사회에 어울릴 수 있도록 부단히 개선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를 비롯하여 기업, 지역사회, 가정 및 개인이 상호 협력하면서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보건복지부(1998), 제1차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
2.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 자료실(2002), 연도별노인인구추계.
3.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실(2002),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관련 귀국보고서.
4. 보건복지부 가정복지과심의관실(2001), 2000년도 노인복지시설현황.
5. 보건복지부 가정복지과심의관실(2002), 2000년도 전국노인여가시설현황.
6. 통계청(2000), 2000 한국의 사회지표.
7. 광주광역시(2002), 2001 광주시정백서.
8. 임만택(1998), 주거환경계획, 기문당.
9. 임만택, 박경갑(2000), 3세대가족의 동거실태와 동거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제11권 1호.
10. 임만택, 박경갑(2000),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자의 주거환경

- 전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제2권 4호.
11. 임만택, 박경갑(2001), 국내외 배리어프리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제3권 1호.
 12. 임만택, 박경갑(2002), 고령자의 동거형 주택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3권 제3호.
 13. 임만택, 박경갑(2002), 고령자의 정주지향성에 따른 주거환경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제4권 1호.
 14. 임만택, 박경갑(2002), 고령사회에서 미국 주택정책의 전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제4권 2호.
 15. 임만택, 박경갑(2002), 고령자를 위한 주거계획의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제4권 2호.
 16. 住宅團地環境設計ノート編輯委員会(1996),ハウジングキーワード200選, 日本住宅協.
 17. 小笠原祐次外(1998), 高齢者福祉, 有斐閣.
 18. 小笠原祐次編(1995), 老人福祉論, ミネルヴァ書房.
 19. 建設省福祉政策研究会(1995), 生活福祉空間づくり, ぎょうせい.
 20. 日本建築学会編(1994), 高齢者建築環境, 彰国社.
 21. 21世紀住生活研究会編(1996), 住生活ビジョン21, 住宅新報社.
 22. 高橋儀平(1996), 高齢者・障害者等に配慮した建築設計マニュアル, 福祉のまちづくりの実現に向けて, 彰国社.
 23. 早川和男外(1995), 住まいの論理, 嵯峨野書院.
 24. 態谷公明外(1996), 高齢社会の適正技術, 日本評論社.
 25. 高齢化と住宅を考える会編(1992), 高齢化社会の住宅, 一粒社.
 26. J. David Hogg(1985), Housing for the Elderly,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Inc.
 27. James J. Pirkl(1994), Transgenerational Design,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Inc.